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21

발의연월일: 2022. 6. 17.

발 의 자:노웅래・이용우・양정숙

윤준병 • 전용기 • 김정호

정성호 • 고영인 • 김영진

이병훈 · 김병기 · 최기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에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·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. 그리고 현재 까지도 은행은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 하여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 제가 제기됨.

그런데 현행법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이에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·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·설명하도록 규정하고

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2제2항 등).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2제2항 중 "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1. 금리,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
- 2.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. 다만,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.
 - 가.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: 계약조건,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 요 내용
 - 나.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: 약과
 - 다.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 계약 서류(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,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2조의2(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52조의2(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) ① (생 략)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 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 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 -----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여야 한다. 를 마련하여야 한다. 1. 금리, 계약 해지 및 예금자 <신 설>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 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공시할 것 2.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<신 설>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 나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. 다만, 이미 체결된 계약 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 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. 가.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

우: 계약조건,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

<u>나.</u>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: 약관

다.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:
계약 서류(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
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
되는 담보, 소득 등에 관한
정보를 포함한다)

<삭 제>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

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·⑤(생략)